

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와 governance System



KOPRI
극지연구소



산하온환경연구소
김기순

목차

●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

● 영유권

● 해양관할권

● Governance System

● 현안문제

● 맺음말



법제도 / 남극

- 남극조약체제 (Antarctic Treaty System: ATS)

과학연구, 평화적 이용,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법제도

남극조약 (Antarctic Treaty: 1959)

권고 (Recommendations)

남극물개보존협약 (CCAS: 1972)

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(CCAMLR: 1980)

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(CRAMRA: 1988)

남극환경보호의정서(Madrid Protocol: 1991)

법제도 / 남극

남극조약 (AT, 1959)

- 체결배경

국제지구물리관측년(IGY: 1957-1958)의 성공
미국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제안, 남극회의 개최 후 체결

- 주요 내용

평화적 목적의 이용(제1조)

과학적 조사의 자유(제3조)

영유권주장 동결 (제4조)

군사적 행위, 핵실험, 핵폭발, 핵폐기물 처분 금지(제5조)

지리적 적용범위 & 공해의 자유 (제6조)

포괄적 사찰제도(제7조)

남위 60° 이남의 지역과 이 지역내의
모든 빙원(ice shelves)

법제도 / 남극

권고

1995. 19th ATCM
(서울) 에서 개정

권고 (Recommendation)

ATCM의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
모든 ATCP 정부가 승인하면 효력
발생, 법적 구속력 보유

(남극조약 제9조 4항)

환경보호, 기상, 통신, 여행, 우편업무,
과학연구, 특별보호구역 등

(ex: Rec.III-8: 남극 동식물군의 보
호에 관한 합의규칙. 2011년 폐지)

조치 (Measure)

모든 ATCP 정부가 승인하면 법적 구속력
발생

결정 (Decision)

ATCM이 내부기관 문제에 대해 채택
채택과 동시에 효력 발생

결의 (Resolution)

권고적 문서. 법적 구속력 없음

법제도 / 남극

- 남극물개보존협약 (CCAS, 1972)

물개의 상업적 과잉포획 규제

- CCAMLR (1980)

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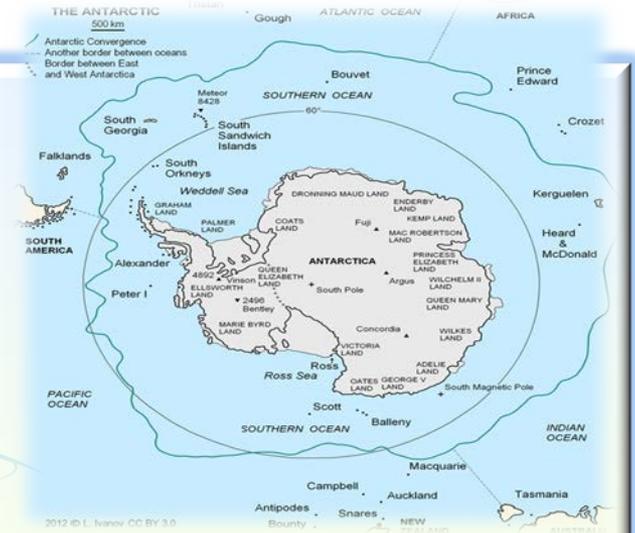
지리적 적용범위 확대 (남위 60° 이남, 남위 60° 안 남극수렴선 사이)

생태적 접근방법에 기초

- CRAMRA (1988)

남극조약지역의 광물활동규제

비준 불발



법제도 / 남극

▪ 남극환경보호의정서 (1991)

• 채택배경

오스트레일리아와 프랑스의 공동제안으로 채택

• 의의

남극환경과 생태계를 포괄적,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단일문서로,
모든 남극활동 규제

• 목적

남극환경과 관련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,
남극을 과학과 평화를 위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

법제도 / 남극

- **주요 내용**

기본원칙 (제3조)

남극광물자원활동 금지 (제7조)

비상대응조치 (제15조)



- **부속서**

부속서 I (환경영향평가의 절차)

부속서 II (남극 동식물군의 보존)

부속서 II (폐기물 처리안 관리)

부속서 IV (해양오염방지)

부속서 V (남극지역의 보호 및 관리)

부속서 VI (환경적 비상사태에서 발생하는 책임부속서)

법제도 / 북극

양자협정, 다자국제협약, 북극이사회 체제하의 조약

■ 초기 국제협약

- 1911 NORTH Pacific Sealing Convention
북방털물개 보호 (영국, 일본, 러시아, 미국)
- **1920 Svalbard Treaty**
노르웨이의 주권 및 당사국 국민의 어업 · 해양 · 산업 · 광업 활동 인정 (노르웨이, 러시아, 스페인, 일본, 중국, 한국 등)
- 1973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lar Bears
북극곰의 서식지 보호 및 생태연구 협력
(러시아, 미국, 캐나다, 덴마크/그린란드, 노르웨이)

법제도 / 북극

· 양자협정

미국-러시아	알래스카 할양조약	1867
미국-러시아	베링해 해양경계획정협정	1990
미국-캐나다	북극협력협정	1988
노르웨이-러시아	Varangerfjord 협정 (바렌츠해 해양경계획정)	1957
노르웨이-러시아	바렌츠해 어업 잠정협정	1978
노르웨이-러시아	Varangerfjord 지역 해수면 한계설정 협정	2007
노르웨이-러시아	Barents해와 북극해 해양경계 및 협력 협정	2010
노르웨이-러시아	환경협력협정	1988
캐나다-러시아	북극협력협정	1992
캐나다-덴마크	캐나다-그린란드 사이 대륙붕경계획정협정	1973
캐나다-덴마크	Tentative Agreement on Lincoln Sea Boundary	2012
아이슬란드-덴마크(그린란드)	Agreed Minutes between Denmark (Greenland) & Iceland (Irminger Sea 대륙붕경계획정)	2013

법제도 / 복극

■ 다자협약

1982 UNCLOS

MARPOL 73/78

1969 Civil Liability Convention for Oil Pollution Damage

1969 Convention on Intervention

1971 Fund Convention

1972 London Convention

1974 Paris Convention

1979 장거리 국경이동대기오염협약(LRTAP)

1985 Vienna 협약 & 몬트리올의정서체제

1992 기후변화협약(UNFCCC) & 교토의정서

1992 생물다양성협약(CBD)

2001 스톡홀름협약(POPs)

법제도 / 북극

▪ 북극이사회 체제 하의 조약

A. Arctic Aeronautical & Maritime Search and Rescue Agreement (SAR Agreement 2011)

• 협약 목적

북극권에서의 항공 및 해양 수색·구조 협력 및 조정 강화

• 적용영역

수색 및 구조 지역의 경계 설정은 국가간 경계획정이나 주권, 주권적 권리, 관할권을 해치지 않는다(3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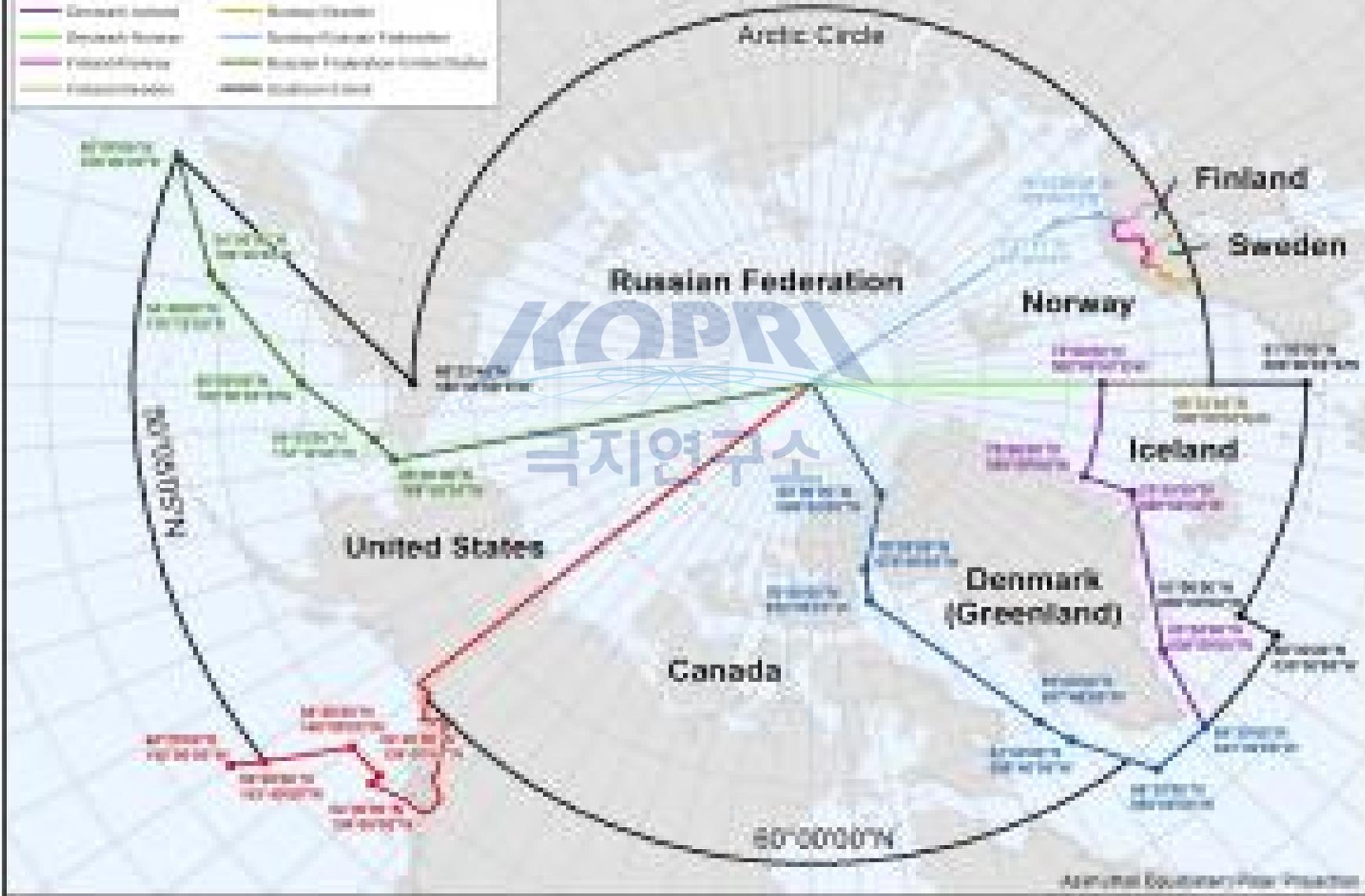
• 주요 내용

북극권의 국제수색 및 구조(SAR)활동의 범위 및 대응 조정
Rescue Coordination Centers 설치, 국가간 협력
수색 및 구조활동의 목적으로 타당사국 영토 진입 시 사전허가요청

Search and Rescue Definition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Canada Search | Finland Search/Rescue |
| Canada United States | Iceland Search |
| Denmark Search | Norway Search |
| Denmark Search | Russia/Finland/Canada |
| Finland Search | Russia/Finland/Canada |
| Iceland Search | Search/Rescue Area |

**ARCTIC SEARCH AND RESCUE AGREEMENT
AREAS OF APPLICATION
ILLUSTRATIVE MAP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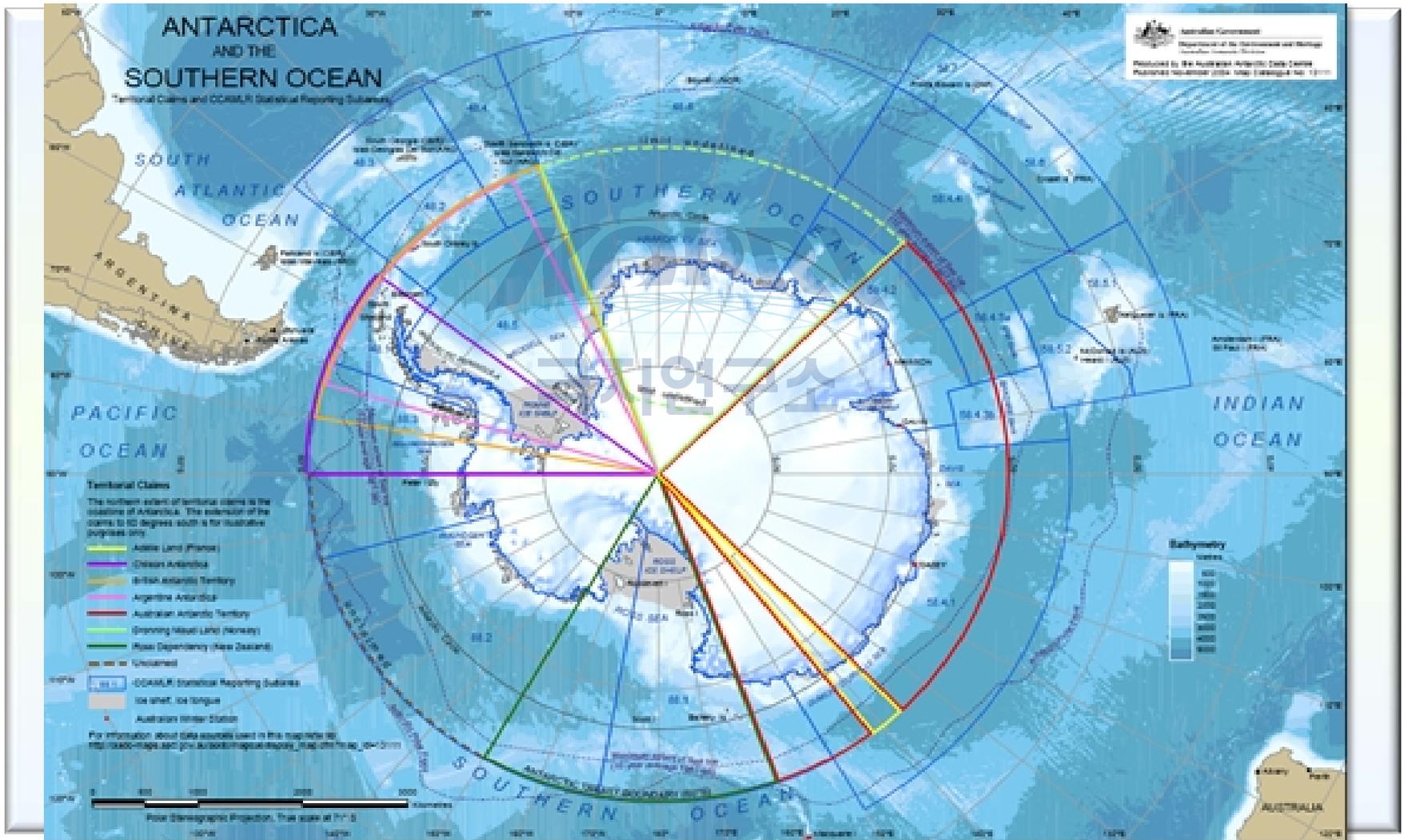
Actual Boundary Line Position

법제도 / 북극

B.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(북극 OPRR 협정, 2013)

- **협약 목적**
유류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의 유류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국가간 협력, 조정, 상호지원 강화
- **적용영역**
당사국이 주권, 주권적 권리,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(내수, 영해, EEZ, 대륙붕)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오염사고
- **주요 내용**
유류오염사고에 신속,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유지
유류오염 대비 대응에 책임있는 국가기관, 24시간 연락담당관 지정
유류오염사고 시 통보. 모니터링 활동. 지원비용 보상.

영유권 / 남극



영유권 / 남극

■ 영유권 주장의 실태

영국, 프랑스, 노르웨이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아르헨티나, 칠레 남극점을 기점으로 V자 모양의 영역에 대해 영유권 주장 남극대륙 전체의 85% 차지

■ 영유권주장의 법적 근거

선형이론(sector theory), 발견, 실효적 점유, 완화된 실효적 점유이론, 지리적 계속성, 근접성, uti-possidetis (1493년 교황칙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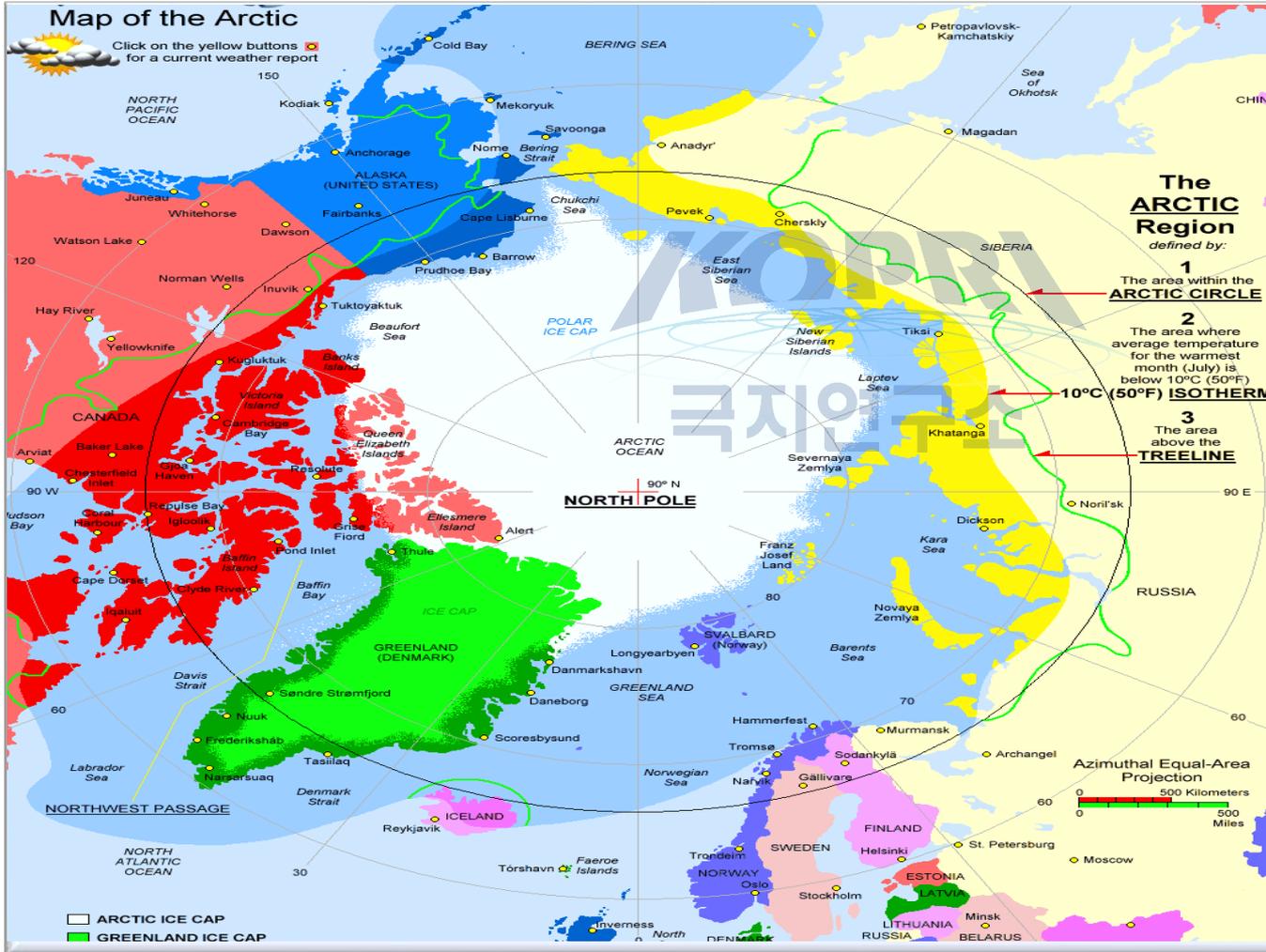
■ 남극조약 제4조의 영유권 주장 동결

“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남극영유권에 관하여 이전에 주장한 권리나 주장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며(제1항 a),

당사국 또는 그 국민의 남극활동 결과 보유할 수 있는 영유권주장의 기초에 대한 포기나 감소로 해석되지 않는다(제1항 b)

남극에서 다른 국가의 영유권이나 영유권주장, 또는 영유권주장의 기초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당사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(제1항 c)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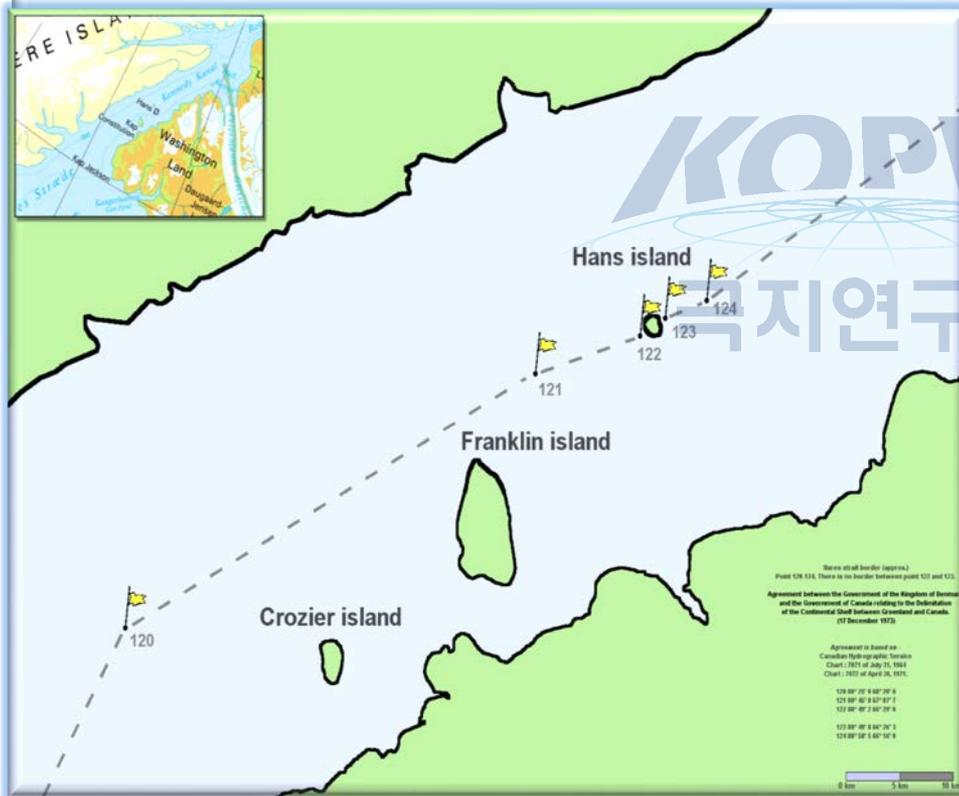
영유권 / 북극



- 16세기 이래 북극지역 탐험 시작
- 육지영토에 대한 북극권국가의 영유권 주장 - 발견, 실효적 점유, 선형이론, 법적 권원 선언 등에 기초
- 북극권 심과 해양지역에 대한 분쟁 발생

영유권 / 북극

■ Hans Island Dispute (캐나다-덴마크)



캐나다 Ellesmere 섬- 북부 그린란드 사이, Nares 해협 Kennedy 운하의 중앙에 위치한 무인도 (1.3km²)

1973년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캐나다- 덴마크 협정 체결

Davis 해협에서 Robeson 운하까지 127개 지점 작성, 122번 지점-123번 지점 사이의 거리(875m)는 측량선을 긋지 못함

2000년대 이후 논쟁 재개

해양관할권 / 남극

- 1982년 UNCLOS 채택으로 남극 해양관할권 문제 제기
ATS가 해양관할권의 존재와 확대를 인정하는가?
- **남극조약 제4조 1항**
영유권 동결 규정. 해양관할권은 규정하지 않음
- **남극조약 제4조 2항과 CCAMLR 제4조 2항 (d)**
남극조약 기간 동안 새로운 영유권주장/기존 영유권주장 확대 금지
- 영유권주장국
남극조약 지역 내에서 해양법협약에 따라 확대된 연안국관할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
- 영유권비주장국
확대된 연안국관할권 행사는 새로운 영유권주장 또는 기존의 영유권 주장의 확대에 해당되는 것으로, 허용되지 않는다

해양관할권 / 남극

■ 2004. 오스트레일리아 CLCS에 대륙붕 한계획정 문서 제출.

AAT 주변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수역 설정 포함.

CLCS에 AAT주변 대륙붕관련자료 검토하지 않도록 요청

■ 2009. 노르웨이 Bouvetøya, Dronning Maud Land에 대한 대륙붕 경계획정문서 제출

Dronning Maud Land 관련 자료를 검토하지 않도록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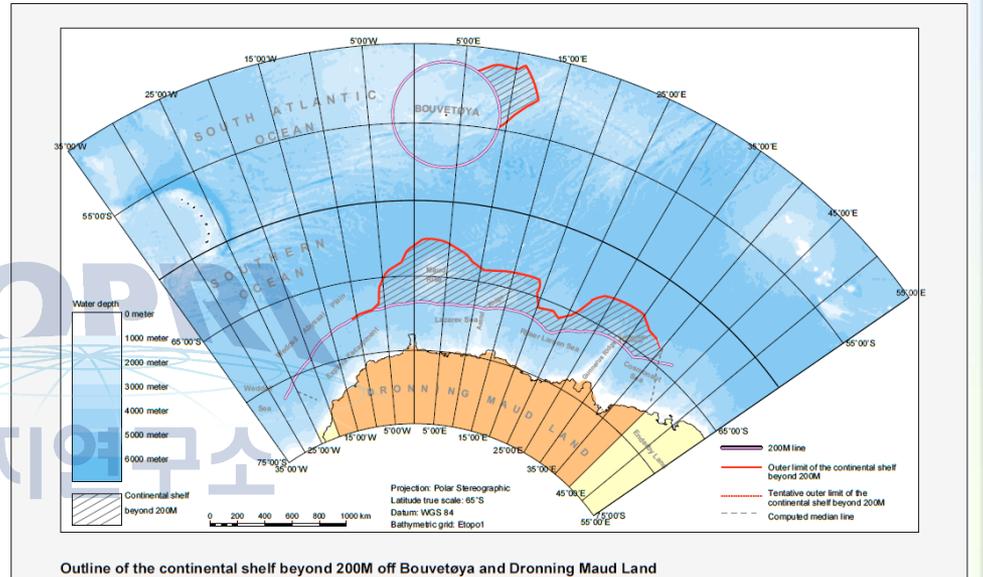


Fig. 1. Outline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(M) off Bouvetøya and Dronning Maud Land.

Bouvetøya와 Dronning Maud Land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경계획정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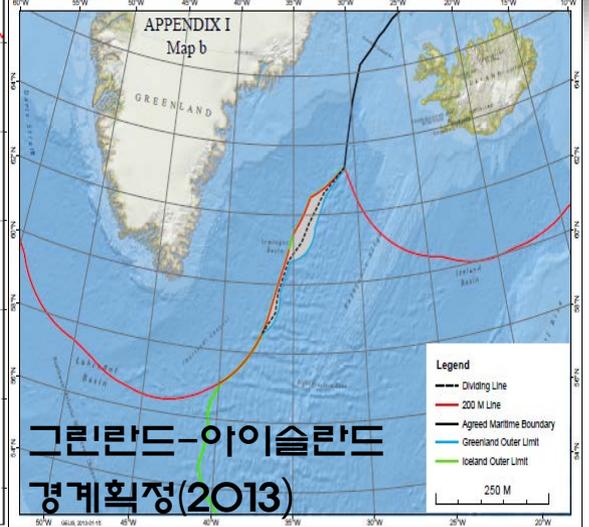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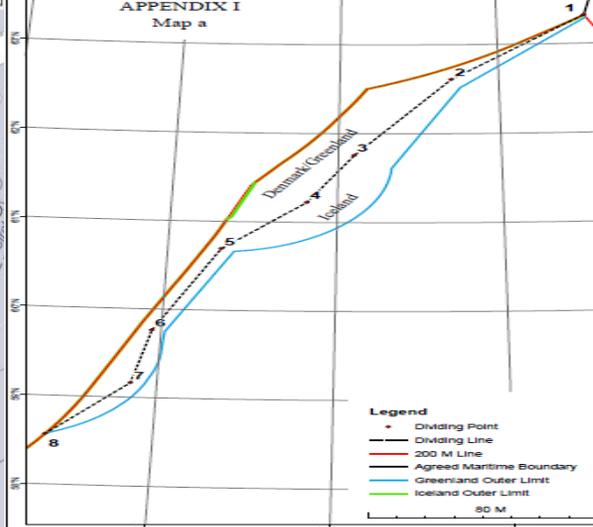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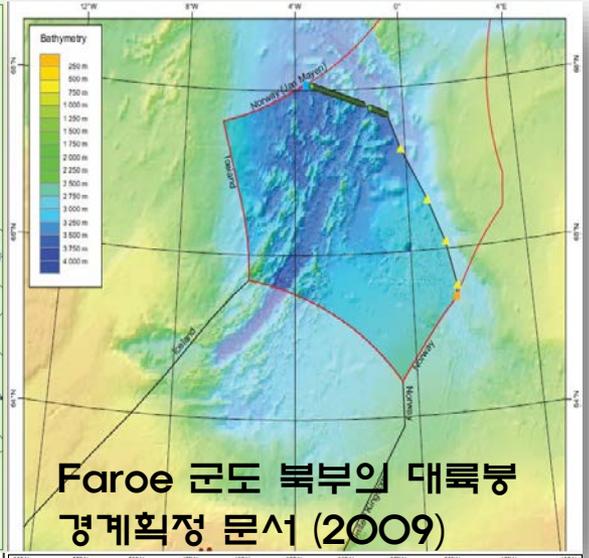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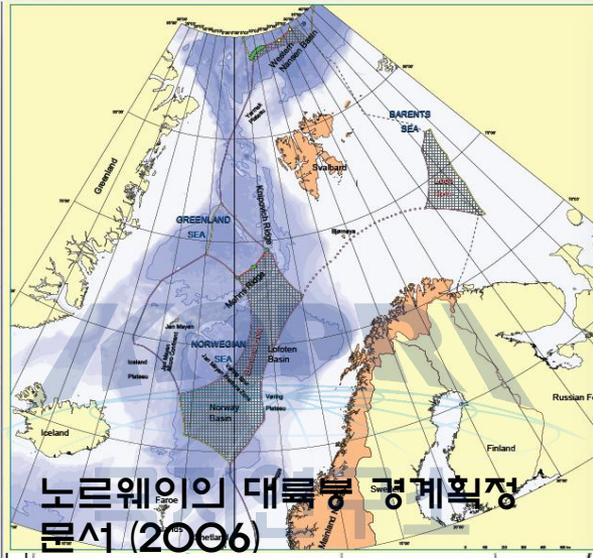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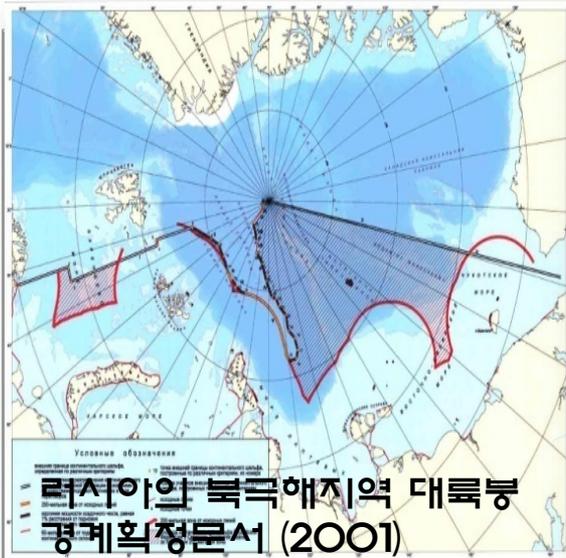
해양관할권 / 북극

■ 북극권국가의 해양관할권 확대 주장

UNCLOS 채택, 자원개발 등으로 해양관할권 범위 확대 시도
EEZ와 200해리이원 대륙붕 중복지역의 분쟁

- Lomonosov 해령 (러시아, 캐나다, 덴마크)
- Barents 해 (노르웨이-러시아) Varangerfjord, Loop Hole지역 중복지역
1978 잠정협정: Varangerfjord지역에 Grey Zone 설치, 어업활동 합의
2010 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으로 해양경계분쟁 해결
- Svalbard 군도 (노르웨이-러시아, 스페인 등)
어업권 기타 경제적 접근권 관련 분쟁
- 노르웨이 본토와 Faroe 군도(덴), Jan Mayen, Southern Banana Hole의 대륙붕 중복지역- 2006년 합의의사록을 통해 해결
- Beaufort해 해양경계획정, 캐나다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(캐나다-미국)

해양관할권 / 북극



Governance System / 남극

-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(ATCM) 중심의 관리체제

- **ATCM**

남극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협약당사국 정부간 forum
남극조약체제 운영 협의, 남극의 주요정책 입안, 심의기관
consensus에 기초한 의사결정권 (제9조)

Meetings

1962년(Canberra) – 1992년까지 2년마다 개최

1994년부터 매년 개최

비정기적으로 남극조약특별당사국회의 개최 (SATCM)

전문가회의 (Meetings of Experts)

Governance System / 남극

- 남극조약협인당사국 (ATCP)

원서명국 (12개국) & 실질적인 남극과학활동을 실시한 국가 (16개국)

남극정책결정권 보유



- 남극조약 회원국

남극조약협인당사국 (28개국)

비협인당사국 (21개국)

- Observer

COMNAP, ASOC, IAATO 기타 국제기구, 과학기구, NGOs

Governance System / 남극

- 사무국 (Secretariat)

2004. Buenos Aires에 상설사무국 설립

남극조약체제의 행정지원업무

4년 임기의 사무총장 선출

수행업무

ATCM 연례회의 & CEP 회의 지원

당사국간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의정서 관련 정보 교환 촉진

ATCM 문서의 수집, 보관, 정리, 출판

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활동에 대한 공적 정보 제공 및 배포

Governance System / 남극

- CCAMLR Commission

남극해양생물자원의 관리조치 결정

주요 사안은 회원국 consensus에 의해 결정

Scientific Committee

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, 위원회 활동 지원, 자료수집 및 연구

Secretariat

양 기관의 업무 지원(Hobart, Tasmania)

- CEP

의정서이행관련, ATCM에 과학적, 기술적 조언을 하는 권고적기구

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. 임기제 의장, 부의장 선출

Secretariat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북극이사회 (Arctic Council) 중심의 관리체제

- 북극이사회 설립 배경

1990년 캐나다정부의 북극이사회 창설 제안
환경문제와 북극권이 직면한 공동관심사를 다룰 필요성

1991년 **AEPS**(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) 출범

1989년 북극권 8개국의 Rovaniemi 회동

1991년 북극환경보호선언 & AEPS 채택

soft law에 기초한 환경협력체제

* Action Plan
Pops, 유류오염, 중금속, 소음,
방사성물질, 산성화 분야

* Working Group
AMAP, CAFF, PPR, PAME

1996년 Ottawa 선언을 통해 북극이사회 설립 (AEPS 승계)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북극이사회의 법적 지위

북극환경 & 생태계 보호,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
북극권 국가와 원주민공동체, 주민 간에 북극문제에 대한
협력증진수단을 제공하고 AEPS의 프로그램을 감시, 조정하는
고위급 정부 간 포럼 (high-level intergovernmental forum)
구속력있는 정책결정권 결여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**회원국**

캐나다, 덴마크/그린란드/Faroe Islands, 핀란드, 아이슬란드,
노르웨이, 스웨덴, 러시아, 미국
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(consensus)

- **영구참여자**

Arctic Athabaskan Council (AAC)
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(AIA)
Gwich'in Council International (GCI)
Inuit Circumpolar Council (ICC)
Russian Arctic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(RAIPON)
Saami Council (SC)
북극이사회의 교섭 및 결정과 관련한 협의권 보유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옵저버

정식옵저버 (permanent observer)

각료회의에서 승인받은 비북극권국가, 정부간/의회간 기구, NGOs
회의에 참석, 북극권국가나 영구참여자들 통해 프로젝트 제안

- * 비북극권국가

영국, 프랑스, 독일, 폴란드, 스페인, 네델란드 (기존 6개국)

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 (추가 승인된 6개국)

- * 정부간, 비정부간 옵저버

UNDP, UNEP, 국제적십자사, IUCN, Nordic Council 기타

잠정적 옵저버(ad-hoc observer)

매 회의마다 참석 요청

- * Arctic Council Observer Manual 채택 (Kiruna, 2013)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Meetings

의장국(2년 임기)이 6개월마다 Senior Arctic Officials (SAO) meeting, 임기 말 각료회의(Ministerial meeting)주재, 선언문 채택

Canada: 1998

United States of America: 1998 – 2000

Finland: 2000–2002

Iceland: 2002–2004

Russian Federation: 2004–2006

Norway: 2006–March 2009

Denmark: 2009–2011

Sweden: 2011–2013

Canada : 2013–2015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Secretariat

북극이사회의 행정업무 지원기관
북극이사회 회의 조직, 웹사이트 운영, 보고서 및 문서 배포 등

임시사무국

1998-2006 인장국에서 사무국 유지 책임

2007-2013년 Norwegian Polar Institute (노르웨이, 덴마크, 스웨덴 3국간 합의)

상설사무국

2011년 Nuuk 각료회의에서 상설사무국 설립 결정

2013.1.1부터 Tromsø (Norway)에서 출범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보조기관

working groups

task forces

expert groups

기타 북극이사회가 설립하는 보조기관



- Programs and Action Plans

Arctic Biodiversity Assessment

Circumpolar Biodiversity Monitoring Programme (CBMP)

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(ACIA)

Arctic Human Development Report (AHDR)

Governance System / 북극

- Working Group

Arctic Monitoring & Assessment Programme (AMAP)

Conservation of Arctic Flora & Fauna (CAFF)

Emergency Prevention, Preparedness & Response (EPPR)

Protection of the Arctic Environment (PAME)

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(SDWG)

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(ACAP) (since 2006)

현안문제 / 남극

- 기후변화
- Bioprospecting
- Antarctic Tourism
- Liability-책임부속서 비준
- 남극조약과 환경보호의정서 하의 사찰활동
- IUU어업



현안문제 / 북극

- 기후변화
- 환경오염
- 북극항로의 운송활동과 규제
- 수산자원의 관리 및 규제 - 과잉어획, IUU어업



맺음말

- 남극조약체제의 성과와 한계

- 성과

영유권 분쟁을 막고 50년 이상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

광물개발 유예, 과학적, 평화적 이용 및 환경보호체제 확립

hard law에 기초한 구속력있고 포괄적인 법제도

혁신적이고 광범위한 환경 및 생태계 보호규칙 채택

- 한계

채택된 조치의 미발효, 관리의 효율성 결여

당사국간 정보 교환, 보고서 제출 및 사찰권 이행 미준수

맺음말

- 북극이사회체제의 성과와 한계

- 성과

북극권 국가간의 국제협력체제 구축

북극권의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

북극주민과 원주민의 참여

- 한계

Soft law에 기초한 구속력없는 관리체제

북극이사회의 구속력있는 의사결정권 결여

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에 단편적으로 적용

효율적인 환경보호제도 미구축, 광물 개발시 환경오염 불가피

KOPRI
감사합니다